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5. 9 선고 2022가단2008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강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생환

변 론 종 결 2023. 4. 11.

판 결 선 고 2023. 5.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21. 9. 6. 접수 제111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2. 11. 6. 원고를 대리한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E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12년 제1405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D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12. 11. 6. 18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3. 5. 5.까지 변제기로 한다.

나. 원고는 D의 F은행 계좌로 2012. 11. 7. G 명의로 7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70,000,000원, 3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으며, 2012. 11. 9. H 명의로 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D은 2012. 11. 7.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75,000,000원, J에게 7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2. 11. 8. 25,000,000원, 2012. 11. 9.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각 인출하였다.

라. C은 2012. 11. 7. 원고로부터 18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3. 5. 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21. 8. 31. C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9. 6.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자이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6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증증서에 따라 실제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에 조카인 D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C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②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D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C이 직접 D의 계좌에 대한 관리 및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I의 실질적 운영자인 L는 ‘D이 I에 투자하기로 하였고, C은 I과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 없으며, D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은 2012. 11. 5. D에게 액면금액 4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요청에 따라 L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는 K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였는데, 채권추심 대상에서 연대보증인인 D은 제외하기로 하였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C은 ‘원고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였고, D이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J은 C에게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2012. 11. 26. 처남인 M 명의로 D에게 원금 70,000,000원 및 이자 4,200,000원을 변제한 점, J과 C 사이에 차용증 등 금전거래에 관하여 처분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이 D이 아닌 C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C은 2012.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나,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로부터 돈이 모두 지급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르면, C이 차용한 돈을 고물을 사기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D에게 입금한 180,000,000원 중 70,000,000원은 J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된 점, D은 원고로부터 입금된 돈 중 2012. 11. 8. 25,000,000원, 2012. 11. 9.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각 인출하였는데, 위 돈의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를 C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대로 실제로 원고가 C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준

별지

목 록

1. 토지 : 전남 완도군 대 660㎡2. 건물 : 전남 완도군

[도로명주소]

전남 완도군

철근콘크리트구조 스톱지붕 2층 주차장 및 주택

1층 93.9㎡

2층 93.9㎡

3. 토지 : 전남 완도군 답 94㎡4. 토지 : 전남 완도군 답 198㎡5. 토지 : 전남 완도군 답 152㎡

끝.

